

연금 시장 리뷰

경제현안

- 동향 :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이슈 :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확대와 대응 과제

퇴직연금

- 동향 :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제도 Q&A
- 이슈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범사회적 공조 노력 필요
- 퇴직연금통계 (2011년 12월 현재)

세심록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향 :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실물 동향: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1년來 최저 수준

-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개월 만에 3%대로 하락하였고 지난 1년來 가장 낮은 상승폭을 보였음
 - 2012년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4%로 낮아졌지만, 전월대비로는 0.5%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음. 2011년 11월과 12월 전월대비 상승폭은 0.1%, 0.4%에 머물렀음
 - 부분별로 식품물가와 전기·수도·가스가 전년동월대비 각각 4.8%, 5.5% 높아져 체감물가를 악화
- 2월에도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고, 이란 사태 등으로 원유값의 상승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서민 체감물가는 더욱 악화될 수 있음

○ 금융 동향: 미 경제지표 호전과 외국인 매수세 등으로 금융시장은 상승

- 미국 고용지표 등 경제지표 호전과 외국인 매수세로 인해 금융시장은 트리플 강세의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임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월 20일 3.40%에서 2월 3일 현재 3.38%로 0.02%p 하락
 - 원/달러 환율은 2012년 1월 미국의 실업 수당 신청건수 하락 등의 경제지표 호전 등으로 1월 20일 1,137원에서 2월 3일 현재 1,118원으로 19원 하락
 - 코스피 지수도 해외지수의 안정적 상승세와 외국인 매수세의 확대 등으로 1월20일 1,949.9에서 2월 3일 현재 1,972.3로 22.4p 상승함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09	2010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1월20일	2월3일	
실물 지표	GDP성장률(%)	0.3	6.2	3.6	4.2	3.4	3.4	3.4	-	-
	산업생산(%)	-0.1	16.2	6.9	10.6	7.2	5.1	5.02	-	-
	소비자물가(%)	2.8	2.9	4.0	4.5	4.2	4.8	4.2	3.4	-
	실업률(%)	3.6	3.7	3.4	4.2	3.4	3.1	3.0	-	-
	경상수지(억달러)	327.9	282.1	276.5	26.1	54.9	69.0	126.7	-	-
금융 지표	국고채3년물(%)	4.04	3.72	3.62	3.80	3.68	3.60	3.41	3.40	3.38
	원/달러(원)	1,276.4	1,156.0	1,107.9	1,119.8	1,083.2	1,085.1	1,143.9	1,137.0	1,118.0
	코스피지수(P)	1,682.8	2,051.0	1,825.7	2,106.7	2,100.7	1,769.6	1,825.7	1,949.9	1,972.3

주: 1) 실물지표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금융지표 중 국고채 3년물 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기간 중 평균값이며 코스피 지수는 기간말 기준임.
 2) GDP 성장률과 산업생산의 2011년 3/4분기, 4/4분기 및 연간은 예측치(P)임.

□ 이슈 :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확대와 대응 과제

■ 중국 경제, 경착륙 논란 지속

중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1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9.2%로 나타나 전년도 10.4%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중국 경제 경착륙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다소 약화되고 있다. 단, 현재의 중국 경제는 경기선행지수와 PMI(제조업)지수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실물경기 둔화세가 가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출 증가세도 급격히 약화되고 있어, 여전히 경제 경착륙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 1월 24일 IMF는 중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 9.0%에서 8.2%로 0.8%p나 낮춰 전망함으로써 중국 경제 경착륙 논란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 경제의 대내외 경착륙 리스크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다양한 리스크들이 복합적으로 가시화된다면 중국 경제의 경착륙은 회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내 요인) 첫째, '역의 부의 효과(negative wealth effect)'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택가격, 주가 등 자산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여력 약화 위험도 상존해 있다. 둘째, 과도한 투자의존형 경제모델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중국 경제를 경착륙 시킬 수 있다. 경제 성장에 대한 소비의 기여도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반면 투자 기여도는 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물가 상승 억제,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 대응이 지속될 경우 과도한 투자의존형 경제모델 붕괴되면서 중진국함정(middle-income trap)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셋째, 지방부채^發 국가재정 부실화 우려도 상존한다. 2012년까지 지방정부 부채 만기상환액은 4.4조 위안에 달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 등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를 이유로 지방정부 부채상환 지원을 지연시킬 경우 지방정부의 은행대출 만기상환이 늦어지면서 은행부실을 유발, 국가재정 부실화를 불러올 수 있다. 넷째,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활용 증가로 기업 신용 리스크가 증대하고 있다. 정부의 긴축강화로 은행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규제회피 수단으로 비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는 그림자금융 활용이 급증하면서 기업 신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경기 침체와 양극화 심화로 사회 계층 간 갈등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등 경제 정책 운영의 큰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대외 요인) 첫째, 세계 경제 회복세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 및 수출기업 업황 악화가 중국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 경제의 회복세 지연으로 중국의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임금, 원자재 등 생산원가가 전년에 비해 크

게 상승하면서 수출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될 전망이다. 둘째, 중국 수출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의 무역분쟁 악화로 對美 수출에 큰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9월 미국의 중국산 타이어 보복관세 조치 이후 2011년 12월 중국이 對美 수입차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가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양국 간 무역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향후에도 위안화에 대한 환율 절상 압력은 물론 美·中 간 상품교역을 둘러싼 분쟁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셋째, 영유권 분쟁 심화로 중국 수출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ASEAN 으로의 수출 악화가 우려된다. 중국은 일본과는 센카쿠열도, 아세안 일부 국가들과는 남중국해 시사군도 영유권 분쟁 등 주변국들과의 정치·외교적 분쟁이 고조되면서 이들 국과들과의 교역 악화가 우려된다.

■ 대응 과제

중국 경제가 성장률 7%대로 급락하여 경착륙한다면 국내 경제성장률도 3%대 중반 이하로 하락할 우려가 크다. 더욱이 중국 경제가 연착륙하더라도 2012년에는 2011년 대비 1%p 전후의 경제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를 전제로 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對中 수출 감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수출 안전망 정비가 필요하다. 무역 보험 및 무역 금융 대출 확대 등 수출 지원 금융 기능 강화를 통해 전기기기, 자동차, 석유화학 등 對中 수출 감소로 타격이 불가피한 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중동, 러시아, ASEAN, 남미 등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둘째, 국내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국제 금융시장은 물론 국내 금융시장은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안정적인 외환 운용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 국내외 금융시장이 안정세에 있더라도 기존의 모니터링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셋째, 對中 경제협력 확대 노력 지속을 통해 기존 수출시장 유지 및 확대를 꾀해야 한다. 2012년은 韓·中 수교 2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 간 교류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호기를 활용하여 기존 수출시장 유지는 물론 확대할 수 있도록 양국 수교 20주년 활용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기업들은 위기대응전략을 마련하여 대중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중국 경착륙에 대비한 컨틴전시 프로그램(비상경영 프로그램)마련, 국가별 지역별 맞춤형 전략 상품개발, 현금경영 강화 등 위기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 한재진 연구위원 (02-2072-6225, hzz72@hri.co.kr)

□ 동향 :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제도 Q&A

(고용노동부 2012/1/25 보도자료 요약)

■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제도 도입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퇴직금제도의 개선'을 의제로 선정한 이후 노사정 논의를 거쳐 2005년 1월 27일 공포한 후 같은 해 12월 1일부터 시행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정 당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도입을 명시함으로써
 - 법 제정 당시인 2005년부터 2010년 이내 제도도입을 예정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노사 단체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법 제정 5년 만에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임
 - ※ 부칙 제1조(시행일)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질문1.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2010.12.1.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어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010.12.1. 전부터 근무한 경우라도 2010.12.1.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됨

【 예 시 】

◆ 4인 이하 사업장에서 2010.6.1. 입사하여 2011.10.31.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2010.12.1~2011.10.31.(11개월)
 -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음
 - ※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은 확대적용 시행시기인 2010.12.1.부터 기산

◆ 4인 이하 사업장에서 2010.6.1. 입사하여 2012.8.31.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2010.12.1~2012.8.31.(1년 9개월)
- 1년 9개월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음

■ 질문2.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법?

-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0.12.1.을 퇴직급여제도 시행시기(기산점)로 함
 -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은 2010.12.1.부터 2012.12.31. 기간에 대하여는 법에 정하는 수준 100분의 50을, 2013.1.1. 이후 기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
- 따라서, 2010.12.1.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2010.12.1. 이후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급여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

【 예 시 】

◆ 2010.7.1. 입사하여 2013.6.30.까지 근무 후 7.1.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2010.12.1~2013.6.30.(2년 7월)
 - 100분의 50 적용기간: 2010.12.1~2012.12.31.(761일)
 - 100분의 100 적용기간: 2013.1.1~2013.6.30.(181일)
- 급여 산정: 100분의 50 적용기간의 퇴직급여($50/100 \times 30$ 일분 평균임금 $\times 761/365$) + 100분의 100 적용기간의 퇴직급여(30 일분 평균임금 $\times 181/365$)

■ 질문3. 상시근로자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 퇴직금산정 대상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등에 의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2010.11.30. 이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간과 2010.12.1. 이후 근로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예 시 】

◆ 근무기간: 2010.1.1.~2011.6.30.(18개월)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기간: 2010.1.1.~2010.8.31.(8개월)

◆ 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 기간: 2010.9.1.~2011.6.30.(10개월)

○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 3개월(A + B)

A: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0.1.1.~8.31.(8개월)

B: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2010.12.1.~2011.6.30.(7개월)

※ 2010.12.1. 기준으로 법적용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 퇴직급여 산정:

100분의 50 적용기간의 퇴직급여($50/100 \times 30\text{일분 평균임금} \times 7\text{개월분}$) + 100분의 100 적용기간의 퇴직급여($30\text{일분 평균임금} \times 8\text{개월분}$)

■ 질문4. 상시근로자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할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

○ 전체 근로기간 중에서 5인 이상인 기간과 2010.12.1부터 2012.12.31.까지 기간의 4인 이하인 기간을 구분하여 각각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여 합산

【 예 시 】

◆ 2010.7.1.부터 2010.12.31.까지 : 4인 이하

◆ 2011.1.1.부터 2011.10.31.까지 : 5인 이상

◆ 2011.11.1.부터 2013.6.30.까지(퇴직) : 4인 이하

○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2010.12.1. ~ 2013.6.30.(2년 7월)

- 100분의 50 적용기간: 2010.12.1. ~ 2010.12.31.(31일)
2011.11.1. ~ 2012.12.31.(426일)

- 100분의 100 적용기간: 2011.1.1. ~ 2011.10.31.(304일)
2013.1.1. ~ 2013.6.30.(181일)

- 급여 산정: 100분의 50 적용기간의 퇴직급여($50/100 \times 30$ 일분 평균임금 $\times 457/365$) + 100분의 100 적용기간의 퇴직급여(30 일분 평균임금 $\times 485/365$)

■ 질문5.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금을 100% 주기로 정한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퇴직금 수준을 50%로 할 수 있는지?

-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시행 이전부터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법정퇴직금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져 있었다면, 특례(2012.12.31.까지 법에 정하는 수준 100분의 50)를 적용하지 않고 이법 시행 전에 당사자간 정한 바에 따라야 함
 - 이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으로 법 시행 전에 퇴직급여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장은 동 시행령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음
 - 따라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으로 퇴직급여를 100%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2010.12.1. 이전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기타 일체의 금품'으로, 2010.12.1. 이후 근로한 기간 대하여는 퇴직급여로서 100%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 질문6.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지?

- 2010.12.1.부터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중 1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므로 사업장 여건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가능

※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 퇴직연금 가입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재무건전성, 인적요건, 물적요건 등에서 일정요건을 갖춰 금융기관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에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음

■ 질문7.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 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만약, 사용자가 동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이슈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범사회적 공조 노력 필요

201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30년 5,216만명까지 성장한 후 '60년 4,396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는 '16년 3,704만명(인구의 72.9%)을 정점으로 감소할 예정이며, 특히 핵심인구(25~49세)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커 노동력의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년 545만명(11%)에서 '60년 1,762만명(40.1%)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명이 10명(노인 8명과 어린이 2명)을 부양하게 되어 전체 사회의 부양 부담이 심각하게 늘어나게 된다.

급속한 고령화는 노동력의 질 저하로 생산성 하락, 인구감소로 주택·교육시장 등의 수요 감소를 초래하여 잠재성장률이 '00년대 4.6%에서 '20년대 3.7%, '40년대 1.4%로 하락할 우려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 지출이 늘어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고령사회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 21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다. 제 1차 기본계획('06~'10)의 수립 및 시행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국가 의제화 및 대응기반 구축의 기초를 완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고령사회 대비 정책이 현세대 저소득 노인층만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한계점도 존재하였다.

'10년 수립한 제 2차 기본계획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 정책대상을 예비노인까지 확대하여 일자리-소득-건강-사회참여에 이르기까지 베이비붐세대와 현재의 노인세대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고령사회분야는 총 78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금피크제 활성화 등 17개 과제가 중점 추진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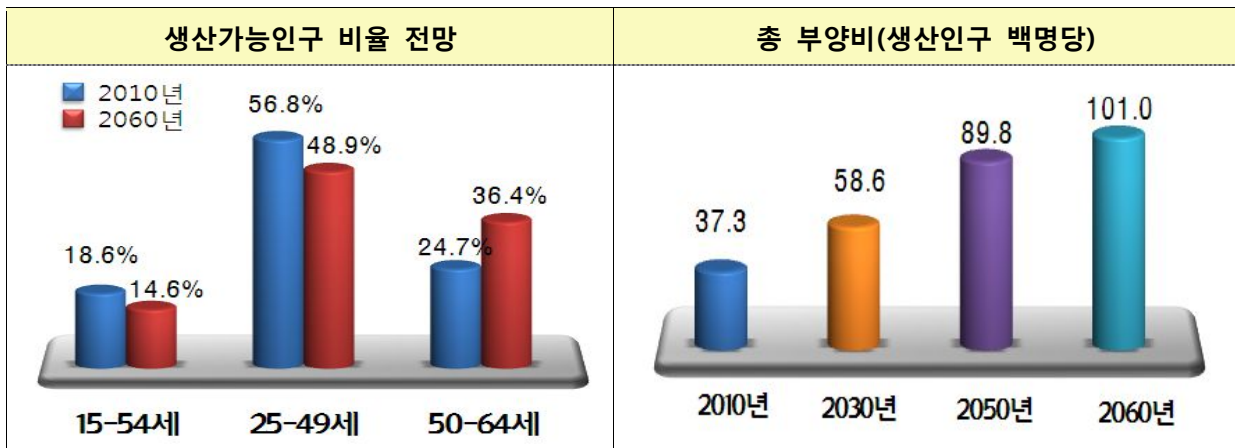
고령사회 대비는 인구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 경제·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 저변에 깔린 인식에서부터 연금제도와 같은 대규모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까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따라서 정부 뿐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자에 대한 고용기회 지원,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쇄신, 스스로 준비하는 자기주도적 노후설계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어우러질 때 고령사회 대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 한국의 고령화 현황

○ 우리나라 인구 구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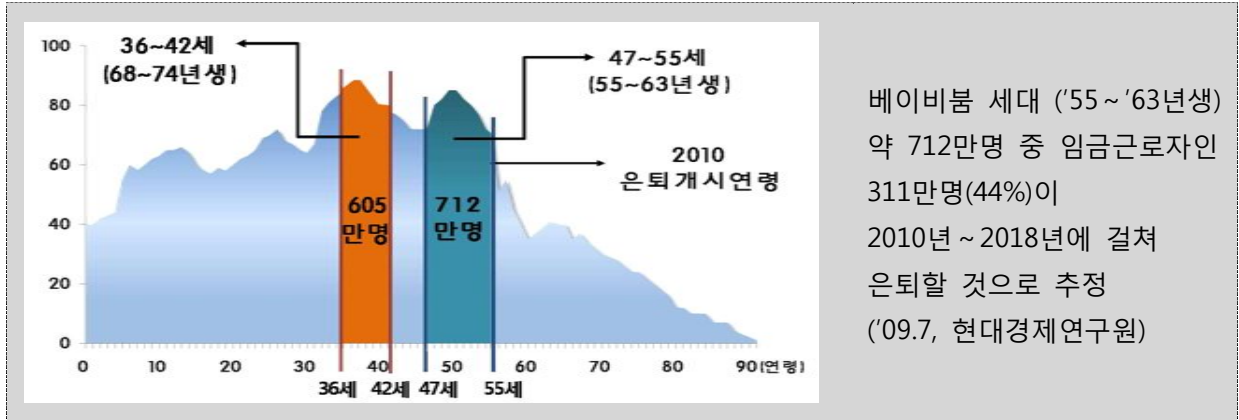
- 201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30년 5,216만명까지 성장한 후 '60년 4,396만명 수준으로 감소
 - 생산가능인구는 '16년 3,704만명(인구의 72.9%)을 정점으로 감소할 예정이며, 특히 핵심인구(25~49세)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큼
- 65세이상 고령 인구는 '10년 545만명(11%)에서 '60년 1,762만명(40.1%)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명이 10명(노인 8명과 어린이 2명)을 부양



-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 중으로, '60년 고령인구는 전세계 최고수준이나 생산가능인구는 최소수준이 될 전망
 - * '60년 생산가능인구 비율 : 한국 49.3%, 중국 56.9%, 일본 51.1%, 스웨덴 56.4%, 독일 54.2%, 미국 59.5%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고령사회 본격화

- 특히 2010년부터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55년~'63년생, 712만명, 전체 인구의 14.6% 차지)의 고령층 진입으로 고령사회가 본격화
 - 베이비붐 세대는 타 세대에 비해 자산규모가 크고, 은퇴 후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 향후 노년기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할 전망
 - * 베이비붐 세대의 월평균 소득은 386만원으로 우리나라 전체가계소득의 1.12배에 해당 (서울대학교, 2010)
 - * 현재의 삶에서 여가가 중요 69.4%, 노후의 삶에서 여가가 중요 83.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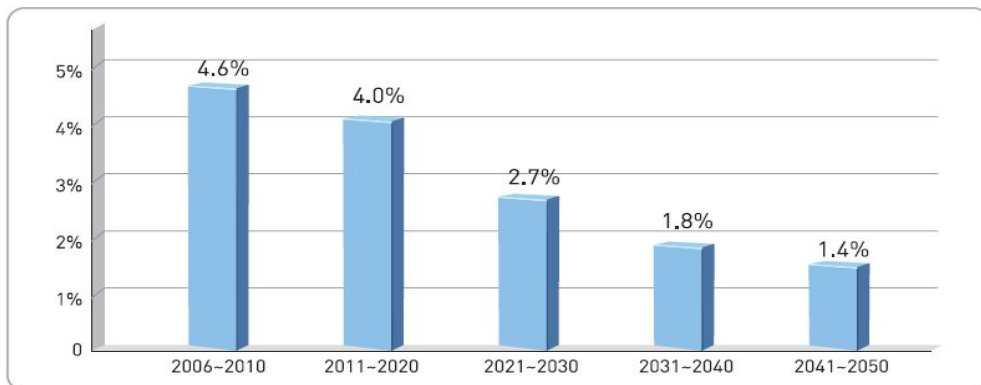


II. 고령화의 파급영향

○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생산성 하락과 수요 감소로 잠재성장률 하락

-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공급이 '15년 63만명, '20년 152만명 부족할 전망이며, 전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질 저하로 생산성 하락이 불가피
 - * 전체인구의 중위연령: ('10년) 37.9세 → ('30년) 48.5세 → ('60년) 57.9세
- 피부양인구 증가에 따라 저축률과 자본소득 증가율이 하락해 투자가 감소, 인구감소로 주택·교육시장 등에서 수요가 감소, 내수시장 위축
 - * 자본소득 증가율 전망(연평균 %, KDI, '06년): ('10년~'20년) 5.69% → ('40년~'50년) 0.80%
 - * 주택건설량 전망 (국토연구원, '07년): ('08년) 471천호 → ('12년) 464천호 → ('20년) 451천호
- 잠재성장률은 '00년대 4.6%에서 '20년대 3.7%, '40년대 1.4%로 하락 전망

<잠재성장률 전망>



※ 자료: 고령사회의 장기 거시경제변수 전망(KDI, '07.10)

○ 노인인구 부양부담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저해

- 연금가입자는 '14년 1,877 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반면, 연금수급자는 계속 증가하여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저하

- 제도부양비(가입자수 대비 연금수급자수)는 '10년에 11.1%이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5년 93.8%로 최고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그에 따라 '44년부터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60년부터 적립기금 없이 부과방식(pay-as-you-go)*으로 전환 예정
- * 적립기금 없이 당년도 보험료를 당년도 급여로 모두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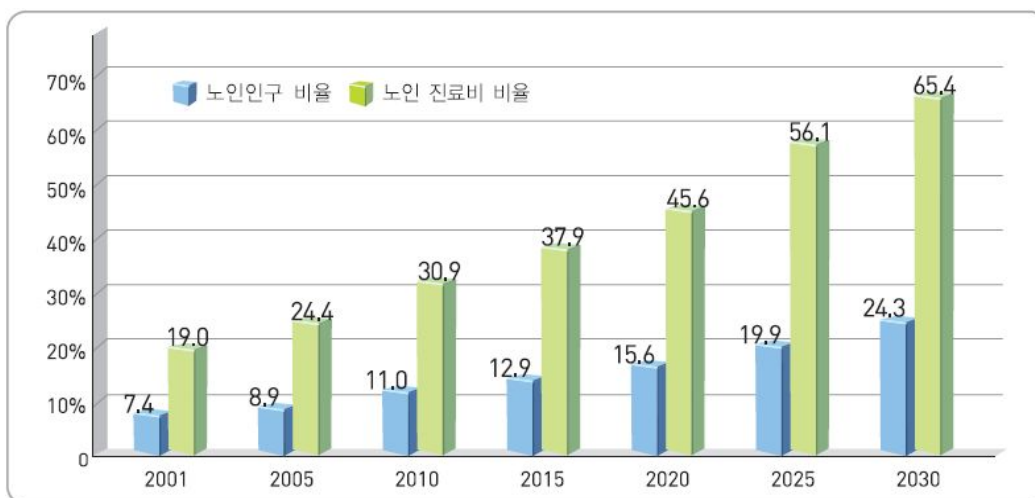
<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제도부양비>



※ 자료: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및 운영개선방향('08)

- '30년에 24%를 차지하는 노인인구가 총진료비의 6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 건강보험 재정지출 구조도 악화 예상

<노인인구 비율 및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대비 노인진료비 비율>



Ⅲ.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고령사회 대응 기반을 마련
 - '08년 정부조직개편 당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조정되었으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국가적 아젠다로,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12년 현재 대통령 소속으로 재조정하는 법안이 국회 계류 중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 21 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중**
 - **제 1 차 기본계획('06~'10)의 수립 및 시행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국가의제화 및 대응기반구축의 기초를 완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고령사회 대비 정책이 현세대 저소득 노인층만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한계점도 존재**

○ 제 2 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0년 제 2 차 기본계획을 수립, '11년부터 시행중으로 고령사회분야 정책대상을 예비노인까지 확대하여 **일자리-소득-건강-사회참여에 이르기까지 베이비붐세대와 현재의 노인세대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

▣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비 사회 각 분야별 사전 대응기반 구축

- 안정적 소득확보를 위해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재고용, 전직·창업지원) 및 공적·사적 연금제도를 내실화
-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및 미래 노인 의료비 적정화를 추진
- 준비된 노후를 위해 노후설계서비스를 지원하고 고령자의 사회공헌도 제고

▣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과 미래 세대 부담완화를 위해 제도 내실화 추진

- 고령자가 활동적·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확대
-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보장 내실화 및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 적정화 동시 추진
- 자원봉사 활성화,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를 통해 고령자의 활동적·생산적 사회구성원 역할 수행 지원

▣ 고령자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 사회 기반시설 전반을 고령친화적으로 개편

- 고령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교통환경 조성
- 독거노인 및 학대노인 등 취약노인의 사회적 보호시스템 마련
- **총 78 개 과제로 구성,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 등 17 여개가 중점과제**

<중점과제>

분야		중점 과제	부처
베이비붐 세대	고용기회 제공	<input type="checkbox"/>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 <input type="checkbox"/> 시니어 창업지원	고용 중기청
	노후소득보장	<input type="checkbox"/>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	고용,기재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input type="checkbox"/>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및 수검률 향상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중심 통합건강관리 체계 구축 <input type="checkbox"/>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도입	복지 복지 복지
	노후생활 설계강화	<input type="checkbox"/>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복지
현 노인 세대	일자리 사업 내실화	<input type="checkbox"/>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지원체계 기능 조정 및 역할 강화	복지 복지
	노인빈곤예방	<input type="checkbox"/> 농지연금 도입	농식품
	건강한 노후	<input type="checkbox"/> 노인질병 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input type="checkbox"/>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input type="checkbox"/> 품질높은 노인요양서비스 제공	복지 복지 복지
	다양한 사회참여 여가문화 제공	<input type="checkbox"/> 고령자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화 <input type="checkbox"/> 고령자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복지,교과 복지,문화
환경 조성	고령친화적 환경	<input type="checkbox"/>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 공급	국토
	노인권익증진	<input type="checkbox"/> 독거노인 보호강화(노인돌봄서비스 확대)	복지

- 임금피크제 지원 기간(6년→10년) 및 지원 대상(54세→50세) 확대
- 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 공개로 검진기관 품질관리 및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소득공제액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 11개 분야 노후설계 교육 프로그램 표준화 개발 및 보급
- '10년 18.6만개인 노인일자리를 '15년까지 연차적으로 30만개까지 확대
-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농지연금 제도 신규 도입
- 틀니 보험적용 검토 및 골다공증 등 노인성 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
- 어르신 자원봉사단 확대 운영 및 노령전문인 자원봉사 조직화
- 장기공공 임대주택의 5%(비수도권은 3%)를 고령자용으로 공급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수혜자를 '10년 120천명에서 '15년 249천명까지 확대

IV.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추가적 노력

○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고령사회 대응 노력 필요

- 고령사회 대비는 인구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 경제·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 저변에 깔린 인식에서부터 연금제도와 같은 대규모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까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
 - 정부 뿐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
 - 고령자에 대한 고용기회 지원,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쇄신, 스스로 준비하는 자기주도적 노후설계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어우러질 때 고령사회 대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고령사회정책과장 김혜진 (02-2023-8470, khj02@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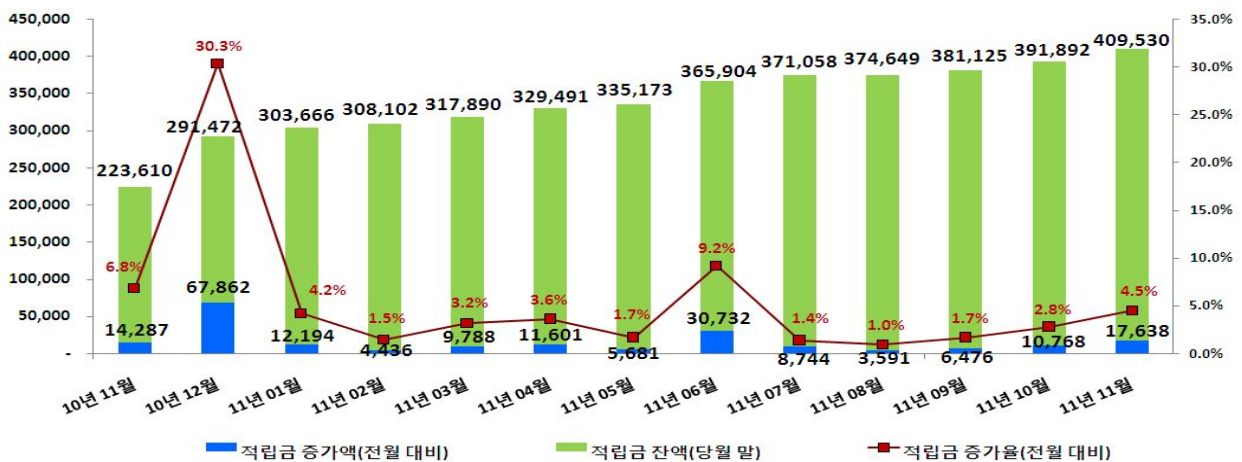
□ 퇴직연금통계 (2011. 12월 현재)

○ 적립금 규모

- 2011년 11월 말 현재 적립금액은 40조 9,530 억원으로 전월말(39조 1,892 억원) 대비 1조 7,638 억원 증가
- 전년말(29조 1,472 억원) 대비 40.5%(11조 8,058 억원) 증가
- 전년 동기('10.11월) 적립금 증가액(1조 4,287 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며, 퇴직연금 도입('05.12월) 이래 최초 40조원 돌파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추이 >

(단위 : 억원, %)



자료 : 금융감독원

○ 도입사업장

-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는 총 130,755 개소로 전월말(125,504 개소) 대비 4.2% 증가
- 쏘 사업장(1,507,158개소)대비 퇴직연금 도입률은 8.7%

<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

(단위 : 개소, %)

구분	10인 미만	10인~ 29인	30인~ 99인	100인~ 299인	300인~ 499인	500인 이상	합계
(A)도입 사업장수	73,923	35,814	15,402	4,122	658	836	130,755
(B)전체 사업장수	1,277,326	167,033	50,007	10,309	1,363	1,120	1,507,158
도입비율 (A/B,%)	5.8	21.4	30.8	40.0	48.3	74.6	8.7

자료 : 금융감독원

□ 洗心錄

□ 임세(任勢), 흐름을 활용하라

연말 연초에는 서점가에 새해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책과 보고서들이 홍수를 이룬다. 10년 후 미래, 10년 후 세상, 2020 트렌드 등 다가올 미래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려는 취지에서 기획된 책들이 신간 코너를 장식하고 있다. 미래의 트렌드를 미리 아는 것은 지진 이후의 쓰나미를 미리 알고 대피하면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느냐 죽느냐를 좌우하기도 한다. 또한, 세상의 큰 변화를 남보다 먼저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은 기업의 변신과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군사와 전쟁에 있어서도 세(勢)를 활용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함을 일찍이 설파한 사람이 바로 기원전 6세기경 『손자병법』을 저술한 손무다. 손무는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전승(全勝)이야말로 모든 전략 중 최선이라고 했고, 전승을 위한 6대 원칙을 소개²하고 있다. 즉, 상대방을 자신의 의도대로 조종하여 반격 능력을 박탈할 책략이 필요하고(궤도), 독특한 전략으로 기존의 원칙을 깨야 하며(출기), 상대의 약점을 공격 목표로 삼아 돌파하고(격허), 주변 환경과 대세의 흐름을 활용하되(임세), 주도권을 확보하고(주동), 승리할 확률이 높은 분야에 자원을 집중 투입하라(집중)고 했다.

손무는 “거센 물결이 빠르게 흘러 무거운 돌도 떠내려가게 하는 것이 곧 세”이므로, “세를 거스르지 말고 활용하라”고 충고했다. 만약 힘이 부족하다면 적의 힘(敵勢)을 빌리고, 지형의 힘(地勢)을 빌리고, 군사들의 사기(氣勢)를 빌려야 하며, 일단 세가 형성되었으면 ‘사나운 기세’로 몰아부쳐 상대방을 단숨에 제압해야 한다는 말이다.

기업도 군대와 마찬가지로 ‘세’를 얻으려면 자원을 집중해 전략적 고지와 험준한 형세를 먼저 점령해야 하며, 민첩하고 절도 있게 행동해야 한다. 2,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헤쳐 나아가기 위한 교훈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다.

² 궁위전 著(류방송 譯), 『손자, 이기는 경영을 말하다』, 와이즈베리, 2011년12월